##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04 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이용우·임미애·김기표

송재봉·김남근·이수진

송옥주 · 최민희 · 양부남

김영환 · 이광희 · 허성무

김 윤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. 특히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.

이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진압을 신속히 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④ (생	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	⑤
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	
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	
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,	
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	
으로 정한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
	구역 및 충전시설은 지상에 우
	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
	<u>한다.</u>
⑥ ~ ⑫ (생 략)	⑥ ~ ⑫ (현행과 같음)